

교수학습센터 규정

제정 2013. 03. 01 개정 2014. 03. 31
 개정 2015. 08. 31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10.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 교수학습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교수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각 캠퍼스별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 3. 31, 개정 2017. 12. 26)

제3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6)

1. 교수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17. 12. 26)
2.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17. 12. 26)
3. 글쓰기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17. 12. 26)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10. 29.)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4조 (조직) 각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교수지원팀, 학습지원팀, 글쓰기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4. 3. 31, 개정 2015. 8. 31,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10. 29.)

제5조 (업무분장) ① 교수지원팀은 창의적 교수법 개발과 강의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 운영 및 주기적 환류체계를 통한 교수법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일반 교원 외 신입교원과 강의개선교원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평가를 담당한다. (개정 2017. 12. 26)

② 학습지원팀은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운영 및 환류 체계를 통한 학습법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학사경고자, 장애학생, 유학생 등 소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평가를 담당한다. (개정 2017. 12. 26)

③ 글쓰기지원팀은 글쓰기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한다. (개정 2014. 3. 31)

④ (삭제 2018. 10. 29.)

제6조 (센터장) ① 센터에는 총괄센터장, 센터장, 부센터장, 운영위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총괄센터장이 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4. 3. 31, 개정 2017. 12. 26)

② 총괄센터장과 각 캠퍼스별 센터장은 경동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3. 31, 개정 2017. 12. 26)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센터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신설 2017. 12. 26)

제7조 (자문위원) ① 자문위원은 경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 교육학을 전공한 교원이나 교수학습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전문적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5. 8. 31, 개정 2017. 12. 26)

② 자문위원은 3명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 8. 31)

③ 자문위원은 본 센터의 요청사항 및 교수학습지원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 한다. (신설 2015. 8. 31)

제8조 (연구원) ① 센터에는 필요한 경우 연구원 또는 수석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 8. 31, 개정 2017. 12. 26)

② 연구원 또는 수석연구원은 교육학 또는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5. 8. 31, 개정 2017. 12. 26)

③ 연구원 또는 수석연구원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교수지원, 학습지원, 글쓰기 지원, 이러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신설 2015. 8. 31)

제9조 (직원 및 행정조교) ① 센터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과 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 8. 31)

② 직원과 행정조교는 센터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신설 2015. 8. 31)

제10조 (연구교수) 센터에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글쓰기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 전문적 의견과 평가를 위한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연구교수는 대학 내 교육학 전공 또는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원 중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31,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10. 29.)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 (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5. 8. 31)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대학교육혁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5. 8. 31,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10. 29.)

③ 각 캠퍼스에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캠퍼스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신설 2015. 8. 31, 개정 2017. 12. 26)

④ 위원회는 산하에 교수학습을 위한 운영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 8. 31)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 8. 31, 개정 2017. 12. 26)

1.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센터 사업 계획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신설 2015. 8. 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신설 2015. 8. 31)

제4장 재정

제14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대학의 예산과 국과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신설 2015. 8. 31)

제15조 (예결산) 센터의 예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설 2015. 8. 31)

제16조 (운영세칙)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센터의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